

「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」 입안계획서

1. 행정규칙명

- 「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」 (관세청 제2023-70호, 2023.12.27.)

2. 개정사유

-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월별납부 승인 요건 추가

3. 주요 개정내용

-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월별납부 승인 요건 추가
(제3조제2항제4호 신설)
 -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7조에 따라 과세자료 등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 미이행 사실이 없는 자

4. 전문 및 신규 조문 대비표 : “붙임” 참조

5. 규제대상 여부 : 해당 없음

6. 시행일자 : 2024. 0월

7. 의견제출 방법

- 제출처 : 관세청 세원심사과
- 담당자 : 신상애 주무관(042-481-7644)
- 제출기한 : 2024. 00. 00.
- 제출방법 : 이메일(shinsang@korea.kr), 팩스(042-481-7869)